

**제1부 3장 대회주최자 등록규정**

**제4조 신청서류**

대회주최자로 KARA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4.1 KARA가 정한 소정의 신청서.

**제4조 신청서류**

대회주최자로 KARA에 등록을 희망하는 **자는 단체, 기업, 개인은** 아래의 서류를 **준비하여 국제대회는 3개월 전, 국내대회는 2개월 전에**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4.1 **대회주최자 등록신청서.**

**제5조 대회주최자의 승인**

5.1 대회주최자의 승인은 KARA 사무국과 이사 5인 이상 심의 후 과반수 동의를 통해 결정한다.

5.2 등록신청서는 KARA 사무국에 직접 제출한다.

**제5조 대회주최자의 승인**

5.1 대회주최자의 승인은 KARA 사무국과 이사 5인 이상 심의 후 과반수 동의를 통해 결정한다.

5.2 등록신청서는 KARA 사무국에 직접 제출한다.

5.3 KARA로부터 승인 받은 대회주최자의 소유권을 2019년 1월 1일부터 타인에게 양도·양수 할 수 없다(기존 대회주최자 포함).

5.4 FIA 또는 KARA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경기장에서 경기를 주최해서는 안 된다.